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중 “95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제3항 후단 중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42조제1항제8호 중 “식품자동판매기의”를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로, “식품자동판매기를”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3호 중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제4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52조제1항제1호 중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를 “호 다목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영 제21조제5호다목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9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을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재질별로 6개월 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으로 하고, 같은 2) 가) 및 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자목3) 후단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며, 같은 3) 가) 중 “식품자동판매기”를 “식품자동조리·판매

기”로 하고, 같은 3)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다)(3)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조리기능을 갖춘 자판기의 경우 자판기 안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세척,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하고,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조리기능을 갖춘 자판기의 경우 조리에 사용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보관시설

사) 영업장은 도박, 사행행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구, 기계, 가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4 제8호가목2)가) 단서 중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 하고 별표 14 제8호가목2)에 각 세세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 (3)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리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고 영업장을 찾은 손님에게 해당영상을 공개하는 경우

별표 14 제8호나목1)가) 중 “잠금장치, 침대(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소파 등의 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욕실을”을 “잠금장치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가공품(치즈류는 제외한다)

별표 17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를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정수기”를 “정수기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 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을 “내부의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사목 전단 중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허가”로 한다.

별표 20의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법 제48조제8항제2호	인증취소
---	--------------	------

별표 20의3 제1호 위반사항란 제1호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식품이력추적 관리시스템에 제공”을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 위반사항란 가목 중 “2일 이상”을 “5일 초과”로, “정보 전부를 제공”을 “정보를 입력”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 위반사항란 나목 중 “제공”을 “입력”으로 하고, 같은 표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II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호다목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 제9호나. 위반사항란 나목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를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자”로 하며, 같은 II 제3호제8호라목2) 위반사항란 2) 중 “특수조명시설, 침대, 욕실”을 “특수조명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업장에 도박, 사행행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구, 기계 또는 가구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	------------	-------------	-------------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청인제출서류 제2호가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 첨부서류 라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 중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를 신설 한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	[] 용기구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m ²] 건물 외부 장소 [m ²] 영업장의 소재지:	
신고사항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를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자동조리·판매기 영업 [] 자동판매기, [] 자동조리·판매기		

이	아	하
---	---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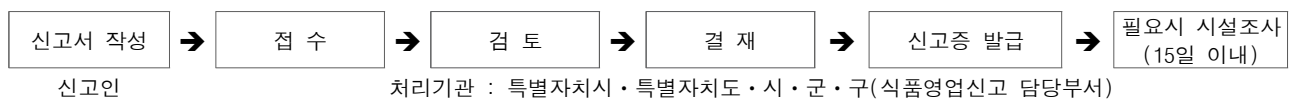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축적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업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냉장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용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m ²	
	식품용수의 종류 []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만 적습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해당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 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	---	-----	---	-----	---	-----------------	---	-----	---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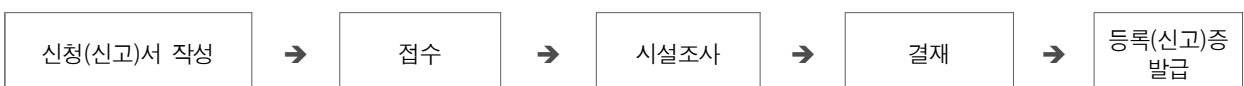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식품영업등록 담당부서)

식품 ·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앞쪽)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제품정보	식품의 유형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부	일(월, 년)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뒤쪽에 적습니다.			
	용도·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위탁생산 여부		[]예	[]아니오
	• 수탁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수탁 영업소의 영업의 종류: • 위탁제조공정:			
	품목의 특성			
	▪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양성분 조절제품 []경도 조절제품 []점도조절 제품 []해당 없음	
	▪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살균·멸균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살균 []살균 []멸균		
▪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기타				

보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합니다)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합니다) 1부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6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가 [별표 14] 제8호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5호나목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u>95퍼센트</u>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 ----- ----- ----- ----- ----- ----- <u>90퍼센트</u> -----.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② (생략) ③ 허가신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u>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u>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u> ----- ----- ----- ----- -----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삭제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 16. (생략)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8.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

---- 식품자동조리·판매기
를 -----

9. ~ 16. (현행과 같음)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_____

가. _____
 _____ 종류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

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3. 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생략)

②·③ (생략)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③ (생략)

④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

----- 종류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

<신 설>

⑤ (생 략)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교육시간) ① -----

-----.

1. -----

-- 호 다목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자-----

2.·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u>영 제21조 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u>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④ (생 략) <u><신 설></u> ⑤ (생 략)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영 제21조제 5호다목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u>----- -----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 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9조(규제의 재검토) -----
---	--

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략) 4.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대상 식품: 2020년 1월 1일 5. (생략)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	--